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

2025년 6월 10일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5월 29일, 정재동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5년 6월 1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(2025. 1. 14.)」을 반영하여,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공무국외출장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공무국외출장의 목적과 적용 범위(안 제1조 ~ 제2조)
- 심사위원회 설치 규정(안 제4조)
- 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(안 제5조 ~ 제6조)
- 공무국외출장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-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(안 제12조)
- 공무국외출장 예산 편성 및 집행(안 제13조)
- 징계현황의 공개(안 제1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-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(2025. 1. 14.)」을 반영하여,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공무국외출장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

2) 주요 내용

- 가) 공무국외출장의 목적과 적용 범위(안 제1조 ~ 제2조)
- 나) 심사위원회 설치 규정(안 제4조)
- 다) 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(안 제5조 ~ 제6조)
- 라) 공무국외출장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- 마)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(안 제12조)
- 바) 공무국외출장 예산 편성 및 집행(안 제13조)
- 사) 징계현황의 공개(안 제15조)

3) 검토 의견

-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4년 12월 발표한 243개 지방의회의 공무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, 외유성 출장, 국외출장계획서·결과보고서 허위 작성, 회계·계약 법령 위반 등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고,
-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요청에 따라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해 출장 사전·사후관리를 강화한 「지방의회 공무 국외출장 규칙 표준(안)」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(2025. 1. 14)하였기에,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이를 반영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

- 이번 개정안은,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의 출장계획서 심사, 주민의견 수렴 등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검토 절차 및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, 전부 개정을 통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
- 공무국외출장 시,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(안)」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- 따라서 본 개정안은 회의내용 및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됨
- 또한,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이면서 규정이 미비했던 부분은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고,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권고안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제고와 의사 공개 활성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,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